

#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

- '11.7.18. 제정, '16.4.7. 개정 -

## I. 목적

사내하도급 관계가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 간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호 협력하여 도급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,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. 이 가이드라인은 이를 위해서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.

## II. 정의

- ① “사내하도급”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“수급사업주”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한다.
- ③ “원사업주”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한다.
- ④ “사내하도급 근로자”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.

## III. 수급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사항

### 1.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

- ①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근로시간·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고,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미리 서면으로 통지한다.
- ②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를 취한다.
- ③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한다.
- ④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사회보험(산재보험, 고용보험, 건강보험, 국민연금) 가입,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, 제세공과금 납부 등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한다.

- ⑤ 그 밖에 근로기준법,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, 근로자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보호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
## 2. 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위한 노력사항

### (1) 적절한 도급대금의 결정 및 적정임금의 보장

- ① 도급대금은 동종·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사회보험의 사업주 부담부분 등 법령준수에 필요한 비용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되도록 노력한다.
- ② 수급사업주는 도급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임금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고, 원사업주로부터 받은 도급대금 중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이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사회보험료 또는 최저임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 내용이 도급대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사업주와 협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
### (2) 직업능력개발

- 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한다.
- ② 원사업주와 협의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·교재·기자재 및 교육장소 등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받도록 노력한다.
- ③ 교육훈련 등을 통해 향상된 직업능력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과 경력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### (3) 고충처리

- ①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고충을 쉽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, 고충은 신속하게 처리한다.
- ②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충이 원사업주 또는 다른 수급사업주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사업주와 협의하여 고충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## IV. 원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사항

### 1.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

- ① 원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.
- ② 도급계약 체결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한다.
- ③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④ 그밖에 근로기준법,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원사업주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# 2. 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위한 노력사항

#### (1) 적정임금 보장

- ① 원사업주는 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있어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거나 낮은 단가를 강요하지 않으며, 도급대금은 도급계약에 따라 적기에 적정한 방법으로 지급한다.
- ② 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·근로조건, 그 밖의 처우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도급대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③ 사회보험료 또는 최저임금 등이 변동되어 수급사업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 내용이 도급대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, 원사업주가 해당 변동 내용을 도급대금에 반영하였을 때에는 그 대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주에게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④ 도급계약 등을 갱신할 경우 도급대금을 정함에 있어 수급사업주의 기여를 고려하여 원사업주의 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- ⑤ 원사업주와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대표는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배려하도록 노력한다.

## (2) 근로자복지 및 복리후생시설의 이용

- ① 원사업주와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우리 사주조합에 가입(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수급업체에 한한다)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,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②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이용하는 복리후생시설을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한다. 이 경우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공동으로 복리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.

## (3)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

- ①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작업의 시작시간, 작업장간 연락방법, 재해발생위험시 대피방법 등 산업안전·보건 조치에 대하여 수급사업주와 사전에 협의한다.
- ② 수급사업주가 실시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고,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## (4) 직업능력개발

- 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수급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 프로그램·교재·기자재 및 교육장소 등에 대하여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.
- ②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주와 협의하여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## (5) 고충처리

- ① 수급사업주가 소속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사업주의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## V.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

### (1) 도급운영

- ①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당해 도급 업무의 내용 및 도급대금의 구체적인 내역·지급방법·지급기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투명한 운영을 도모한다.
- ② 수급사업주는 독립된 사업주로서 근로자 채용·징계·근태관리, 작업배치·변경 및 업무상 지휘·명령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,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접 지휘·명령하여 원사업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.
- ③ 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의 인사노무관리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고 이에 간섭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작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수급사업주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### (2) 고용안정

- ① 원사업주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도급계약을 장기간으로 하거나 갱신을 보장함으로써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한다.
- ② 원사업주가 부득이 사내하도급 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수급사업주에게 알려주도록 한다.
- ③ 도급관계가 종료되어 수급사업주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원사업주는 신규 수급사업주와 협의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④ 도급관계가 종료될 경우 수급사업주에게 다른 사업장이 있다면 해당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그 사업장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한다.
- ⑤ 원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채용규모 등 일자리 정보를 수급사업주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 중 적격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- ⑥ 원사업주가 직접 수행하던 업무를 사내하도급 관계로 전환하여 수급사업주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근로자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등에 위탁 사유와 그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,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.

### (3) 근로조건 개선

- ①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상호 협력하여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·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.
- ③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수급사업주 소속 근로자 간에 임금·근로조건, 그 밖의 처우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
### (4) 노사협력

- ① 원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며, 이를 이유로 사내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하지 않도록 한다. 이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도 원사업주의 시설관리권 등 경영권을 존중한다.
- ② 원사업주와 원사업주의 근로자대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사업주의 근로자대표가 원사업주의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에서 바람직한 협력방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.